

한국외대·이화여대,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

1. 조사결과

1. 한국외대

교육부장관의 자녀가 가계곤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민원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여부 : 해당 없음(기타 장학금 수행)
- 당시의 장학금 지급관련 규정, 전산기록 및 교육부 보고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한국외대가 2004년 1학기에 교육부장관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한국외국어대 장학지급규정('04. 2.16) 제4조 제3호에 따른 가계곤란 장학금(전산코드 특별1)이 아니라,
- 같은 규정 제4조 제10호[붙임-2]에 명시된 '기타 단과대학 장학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전산코드 특별2)으로 확인됨

※ 2004학년도 장학금 지급현황('05.2.23. 교육부 보고)의 가계곤란 장학금 현황과 특별1 장학금이 일치, 특별2 장학금은 기타장학금 항목에 포함되어 보고

○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의 적정 여부 : 확인 불가

- 문서보존 기한(5년)이 경과*하여 2004년 당시 전산기록 및 장학금 보고문서 등 일부만 있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반문서는 3년, 예산·회계문서는 5년이 보존기간

- 장학금 신청서 및 평가관련 서류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선정 및 지급절차의 적정 여부는 확인 불가

2. 이화여대

외교부장관 자녀가 수령한 이화복지장학금(교내 장학금)은 동 대학의 자체규정과 절차에 맞게 지급되었음

○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여부 : 이화복지장학금 지급

- 이화여대는 외교부장관 자녀에게 2008.2학기부터 2010.2학기까지 가계곤란장학금의 일종인 이화복지 장학금을 매학기마다 총 12,269,800원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실직가정 자녀, 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체 부자유자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내장학금

< 연도별 지급 내역 >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지급액(원)	2,726,600 (등록금2/3)	2,726,600 (등록금2/3)	2,045,000 (등록금1/2)	2,045,000 (등록금1/2)	2,726,600 (등록금2/3)	12,269,800

○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 이상없음

- 이화복지장학금은 대학본부(장학복지팀)의 안내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대학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을 심사·평가하여,

* 장학금 신청자의 거주형태, 학비출처, 학적변동사항, 가족사항, 경제능력 등

- 대학장학위원회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

※ 이화복지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불임1 참조

○ **가계곤란 장학금의 취지 부합 여부 : 불부합**

- 외교장관 자녀의 경우, '08.2.~'09.1학기 까지는 실직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이화복지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합됨
- 그러나, '09.2학기~'10.2학기 까지는 월 가계소득이 600~800만원 수준(장학금지급신청서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가계곤란자로 보기는 곤란
- 다만, 본 건 외교부장관 자녀가 속한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의 경우 이화복지장학금 선정자 대부분이 교수, 부부 교사, 변호사, 회사원, 사업자, 공기업임원 등 사회통념상 중상층 이상의 자녀로 파악되어 그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 스크랜튼 대학은 가계곤란학생이 극소수(5명 내외 추정)에 불과 하여,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13년도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소득분위에 비추어 추정

- 기초~5분위(5명), 7~8분위(4명), 9~10분위(8명+미신청)

< 참고 : 이화여대 장학금 지급여건 및 현황 >

(1) 이화여대의 장학금 지급현황(2008~2010)

- 장학금 지급비율이 18.3%(법정기준 10%)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가계곤란자장학금도 장학금지급액의 37.2%(법정기준 30%)정도에 달하는 등 장학금 지원이 활발한 편임

(2) 스크랜튼 대학 경제사정곤란 장학금 지급현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미래로, 미래드림, 희망드림, 면학장려금 등 다양한 대·내외 장학금이 있어 대부분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고 있음(장학금이 전액면제에 못 미치는 경우, 다른 장학금에서 잔액을 지원 하는 방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학생만으로는 법령상 경제사정 곤란자 지급 비율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이화복지장학금은 신청한 학생 중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고 있음

- 이화복지장학금이 가계곤란 학생들의 면학과 복지를 장려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등 장학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 * '12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시행에 따라 대학 본부(장학복지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에 의거하여 "이화복지 장학생" 선발[이화여대, 학생복지센터-596('12.2.21.)]

II. 향후계획

- 가계곤란장학금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중점 감사 실시
 - (모든 대학) 단과대학별 운영으로 가계곤란 장학금의 취지 달성이 곤란할 경우, 대학 본부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제공)를 토대로 직접 선정 및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중점 감사사항으로 관리) 우리 부의 감사계획에 따라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가계곤란 장학금'의 운영 실태를 중점 감사[대학장학과-142('13.4.5.)]

교 육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절차 등 개선 협조

1. 관련

-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해석(대학장학과-3900, '11.11.8)
- 나. 가계곤란 장학금 부담지급 의심 민원청구(○○단체, '13.3.18.)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각 대학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단과대학 별로 선정·지급한 결과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가계곤란 장학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 받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있었습니다.

※(예) 단과대학 별로 가계곤란 장학금을 배정·관리함에 따라, A 단과대학은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 일부에 대해서만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B 단과대학은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거의 없어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중산층 이상) 모두에게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4. 따라서, 현재 가계곤란 장학금을 단과대학 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제공자료 참고)를 토대로 직접 선정 및 지급하는 등 가계곤란 장학금 선정·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 육 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주무관 서기관 대학장학과장 전결 2013. 6. 11.

협조자 대 학 장 학 과
사무관

시행 대학장학과-963 (2013. 6. 11.) 결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과학기술부 / www.moe.go.kr

전화번호 02-2100-6268 팩스번호 02-2100-6941 / 대국민 공개

공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